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7
----------	-----

제출년월일 : 2013.11.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대규모 점포 등 종사근로자의 건강권보호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토록 등록요건 강화(안 제14조)

- 대규모점포 등 개설 등록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첨부 의무화

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안 제14조의2)

- 영업시간 제한 : (현행) 0시~8시 ⇒ (개정) 0시~10시
 - 의무휴업일 : (현행) 매월1~2일 ⇒ (개정)매월 이틀 공휴일
- * 단,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가능

다. 쇼핑몰 등에 입점한 대형마트를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안 제14조의 2)

-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

라. 영업규제 예외조항 중 농수산물 매출비중을 상향(안 제14조의 2 단서)

- (현행) 농수산물 매출비중 51% 초과시 ⇨ (개정) 55%로 상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13. 9. 2 ~ 9.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평창군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제2조제3호의2”를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유통산업발전법」 제
2조제3”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영위”를 “경영”으로, “제1호”를 “제
4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전통시장을”을 “시장을”로 한다.

제3조 중 “균형있”을 “균형 있”으로 한다.

제5조 중 “사업활동”을 “사업 활동”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총체적”을 “전체적”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을 “(유통업상생
발전협의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10인”을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
회의 회장”을 “회장”으로, “위원은”을 “위원은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
하는”으로, “사람이”를 “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군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2명
2. 군 안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군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 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다. 그 밖에 대·중·소 유통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군 공무원 중 유통 업무를 관장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의 제목“(협의회사무)”를“(협의회사무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시간·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하는”을 “할”로 한다.

제13조 중 “지정하거나 변경”을 “지정취소”로 한다.

제14조의 제목“(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을“(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을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대규모점포등”을 각각 “대규모점포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14조제2항 중 “다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으로, “대규모점포등”을 “대규모점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을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로, “대규모점포등”을 “대규모점포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통질서확립”을 “유통질서 확립”으로,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군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를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

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로, “영업시간”을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을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제1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 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를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는 경우”로, “조건등”을 “조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건등을”을 “조건 등을”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생략)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평창군의 책무)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군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평창군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군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의

-----.

6. (현행과 같음)

7. -----

----- 시
장을 -----.

제3조(평창군의 책무) -----

균형 있-----

-----.

제5조(사업자의 책무) -----
--- 사업 활동-----

-----.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의

수립등)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생략)

②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군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수립등) ①-----

----- 전체적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1명을 포함한 9명 -----
-.

③ 회장----- 위원은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 자가 -----.

1. 군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2명

나. 군 안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기업 대표

다. 군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군 안의 상공회의소 관계자

마. 군 안의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바. 군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 그밖에 군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군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

<신 설>

2. 군 안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기업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군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대·중·소 유통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

<신 설>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 하되, 군수는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협회의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

업인 등 이해관계자

4. 군 공무원 중 유통 업무를 관장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협회의의 운영 등) ① 협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발전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군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 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4조제4항에 관하여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
된 사항 외에 대·중소유통업
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
원에 관한 사항

<신 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
지 회의의 날짜·시간·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
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 설>

③ 협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
는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
원으로 한다.

<신 설>

④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
기를 달리할 수 있다.

<신 설>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
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

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 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 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신 설>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생략)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할 -----

8조에 따른 협의회 협의 거
쳐야 한다.

③ (생략)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등)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1조제3항 각 호의 사
항을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제14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
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
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전
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
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등) ----- 지
정취소-----

-----.

제14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
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
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
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하
다)-----
----- 대규모점포 등-----

-----.

1. (현행과 같음)

2.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 계획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② -----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 대규모점포 등-----
----- .

③ -----
-----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
----- 대규모점포 등-----
----- .

④ (현행과 같음)

⑤ ----- 각 호-----

----- .

1. · 2. (생략)

제14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군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2.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

② 제1항제1호의 영업시간 제한과 제1항제2호의 의무휴업일 지

1. · 2.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
-----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
----- . -----
-----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
----- .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

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받으려는 대규모점포등은 직전연도의 연간 총 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도마다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까지의 범위에서 제한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조건 등의 부과) ① -----

-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조건
등-----

-.

② ----- 조건
등을 -----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군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

제16조(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

----- 범위-----
-----.

② (현행과 같음)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 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은 선언적 · 권고적 형식으로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으로 미첨부 근거규정에 따라 비용 추계서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경제체육과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연락처	(033) 330 -2540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